

2022년도 서울형 R&D 지원사업

G밸리 ICT 융·복합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공고

G밸리를 중심으로 ICT 융·복합 기술사업화 신규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3월 22일

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

모집 개요

- 지원대상: 주관(G밸리 소재 법인 중소기업)+협력(법인 중소기업, 대학, 연구소 중) 컨소시엄
- 대상과제: ICT 기술에 이종기술·산업이 융·복합된 기술개발로 사업화 단계 과제
- 지원규모: 총 10억원(과제당 최대 2억원/1년),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비 차등지급
- 지원기준: 시지원금은 총사업비의 75% 이내 (민간현금은 시지원금의 10% 이상, 기술료 징수형)
- 모집기간: 2022. 3. 22(화) ~ 5. 2.(월) 18:00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https://seoul.rnbd.kr>) 및 설문조사(<https://forms.gle/ejFYAnkzh74wDTT8>)

필독 사항

- ICT와 이종기술·산업을 융·복합한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과제 지원
- 비전문가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과제명, 과제내용 작성 요망
- 주관기관 G밸리 소재 법인 중소기업(컨소시엄 필수, 단독참여 불가)
- 총 사업비 중 민간부담금 25% 이상 필수 (민간부담 현금 시지원금의 10% 이상)
- 선정 후 서울시지원금 100%에 대한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필수
- 선정 전·후 허위사실 기재, 유사성이 높은 중복과제, 사업비 유용 등의 사안이 발생할 경우, 참여제한, 시지원금 전액환수 등의 제재조치 가능
- 선정 후 불가항력적 사유 외 사업 포기 시, 추후 사업 참여 제재
- [붙임] 지원제외 대상 및 우대가점 목록 확인 필수

※ 마감일 전산폭주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신청 요망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G밸리 기업과 타 산업(기업)간 ICT 기술에 이중기술·이중산업을 융·복합하여 G밸리 단지 내 기업 경쟁력 제고

■ 지원대상 (컨소시엄 구성 필수)

- 주관기관(G밸리 소재 법인 중소기업)+협력기관(법인 중소기업 또는 대학 또는 연구소) 컨소시엄
 - 협력기관은 2개 이상 참여도 가능하며 협력기관 없이 단독 참여 불가
 - ※ G밸리 소재 중소기업: 사업지등록증 상 구로구, 금천구 소재 법인 기업
 - ※ 협력기관의 경우 지역제한 없음

컨소시엄 예시	기업+대학, 기업+기업, 기업+연구소, 기업+대학(연구소)+대학(연구소) 등
---------	--

■ 지원규모 및 기간 : 총 10억원, 5개 과제 내외

- 과제당 최대 2억원 이내, 1년 이내(2022. 8. 1. ~ 2023. 7. 31.)
- ※ 평가결과에 따라 시지원금 차등지급

■ 지원분야

- ICT 기술과 융·복합 시 시너지 효과 창출 가능한 이중기술·이중산업 전 분야
-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EE.정보/통신' 해당하는 ICT 기술 필수

중분류	소분류 (예시)
소프트웨어	임베디드 S/W, S/W 솔루션 등
정보보호	공통 보안, 산업보안/융합보안, 네트워크 시스템 보안 등
홈네트워크	유/무선 홈네트워킹 기술, 지능형 정보가전 등

- 기존 제품 개선 및 신제품(서비스) 개발로 매출창출과 해외수출 등 사업화 과제 지원
- ※ 사업화 형태는 구체적인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시해야 함

2. 신청자격

■ 주관기관의 자격

- 접수마감일 기준 법인등기부등본 상 본점 또는 지점이 서울특별시 구로구 및 금천구에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법인 중소기업**
 - ※ 본점 또는 지점(기업부설연구소 포함)의 소재지가 법인등기부등본에 명시된 경우 지원 가능
 - ※ 사업자등록증 상, 종된 사업장은 지원 불가

■ 협력기관의 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법인 중소기업
-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의 산학협력단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서울시 출연기관
 - ※ 협력기관의 경우 지역 제한 없음

■ 과제(부문)책임자의 자격

- 과제책임자: 상기 주관기관의 자격을 갖춘 기업에 소속된 자로 대표자, 연구소장급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분야의 연구수행능력과 경험을 갖춘 자
- 부문책임자 : 과제책임자가 과제의 특성에 따라 지정하는 자로 상기 협력기관의 자격을 갖춘 기관에 소속된 전임교수, 전임연구원, 기업 대표·연구소장, 연구자 등
 - ※ 참여기관 및 과제(부문)책임자의 권한과 책임은 '서울시산학연협력사업 운영요령(2021. 7. 1. 개정)' 참고

참여제한, 의무사항 불이행, 부채비율, 중복성 등 지원제외 요건에 해당될 경우
신청제한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 (붙임1의 지원제외 대상 참고)

3. 지원 원칙 및 기준

■ 기본 원칙

- 주관기관은 개발목표 및 내용이 동일한 과제로 서울형 R&D 지원사업 및 중앙 정부·타 지자체 R&D·기업 지원사업에 중복으로 지원 받을 수 없음

- 해당 공모사업 내, 주관기관 당 최대 1개 과제 신청 가능
- 기 구축된 산업기반(각종 연구센터, 시설·장비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신규인력 채용 및 재료구입 등을 우선 지원하며, 장비구입·시설 구축 등 지양
- 기술개발 및 시험생산, 양산 등을 위한 사업화 관련 기술개발비 지원
 - 인건비, 시작품·시제품 제작, 안전성·유효성 평가, 시험인증 등 기술사업화를 위한 사업화 R&D자금 지원
- ※ 사업비 편성 기준은 '서울시산학협력사업 운영규정(2021. 7. 1. 개정)' 참고
- 사업비는 사업비관리시스템을 통해서만 집행이 가능함
- 협약체결 시 시지원금 100%에 대한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함
 - 보증기간 : 사업기간+6개월(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발행 비용 사업비 소급 가능)
- ※ 최종 선정결과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미제출시 선정을 취소함

■ 지원 기준

- 총 사업비는 시지원금(현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시지원금) : 총 사업비의 75% 이내
 - ※ 평가결과에 따라 시지원금 차등지급
 - (민간부담금) : 총 사업비의 25% 이상 부담(민간부담 현금 시지원금의 10% 이상)

구분	총사업비(가)	시지원금(나)	민간부담금		
			총액(다)	현금(라)	현물(마)
구성 기준	(나)+(다)	(가)의 75% 이하	(가)의 25% 이상	(나)의 10%	(다)-(라)
(예시)	266,667,000	200,000,000	66,667,000	20,000,000	46,667,000

4. 추진절차 및 선정기준

■ 추진절차

공고 및 접수 (3~4월)	사전검토 (5월)	선정평가 (5~6월)	심의위원회 (7월)	선정평가 결과 (8월)
서울R&D지원센터 종합관리시스템	과제계획서 검토 (신청자격 등)	선정평가위원회 선정평가	평가결과 심의·확정	홈페이지공고 및 공문발송
SBA	SBA	SBA	서울특별시	SBA

※ 상기 평가, 선정 협약 등 일정은 신청과제 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선정기준

구 분	평가항목	배점
기술성 평가 (40)	기술개발 목표 및 방법의 적정성	15
	기술개발의 타당성	15
	기술개발 추진능력	10
시장성 평가 (60)	사업화 능력	10
	사업화 타당성	25
	시장진입 가능성	25

■ 평가방법

- 선정평가는 과제 접수 현황에 따라 서류·발표평가의 단계별 또는 통합 발표평가 진행
- ※ 코로나-19 확산우려에 따라 필요시 발표자 안전 등을 위해 발표평가를 비대면(온라인) 평가로 대체할 수 있음(세부 평가계획은 접수 후 개별 안내 예정)
- ※ 비대면(온라인) 평가 시, 원활한 평가 진행을 위해 **발표 동영상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5.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온라인접수 : 2022. 3. 22.(화) ~ 5. 2.(월) 18시까지(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
- ※ 마감일은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신청 요망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절차

신청절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수행내용	‘사업공고’ 내 신청서류 작성	서울R&D지원센터 회원가입	종합관리시스템 상 사업공모 ‘접수하기’	설문조사 참여	접수확인
작성 및 확인	과제계획서 작성 및 증빙서류 준비	SBA홈페이지 연결되어 회원가입	온라인 입력 및 파일 업로드	링크 접속 후 작성 및 제출	종합관리시스템 ‘과제관리’
비 고	다운로드 양식 (한글파일) 사용	과제책임자(개인) 회원가입	압축파일 업로드X	주관기관 과제책임자만 수행	‘접수과제’ 목록 접수상태 확인

<온라인 신청단계별 접수요령>

① 1단계 : 문서 작성 및 증빙서류 준비

- 서울R&D지원센터 → 알림마당 → 사업공고 (공고 게시글의 첨부 참고)
- 과제책임자가 과제계획서(한글파일)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필요 증빙서류 준비
 - ※ 사업비 입력을 통해 과제계획서 작성 내용 검산 가능

② 2단계 : SBA R&D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최초 과제책임자 개인회원 가입

- 우측 상단 회원가입 버튼을 누르면, 서울산업진흥원 홈페이지와 연동되며, 해당 사이트에서 회원가입 진행
 - ※ 기존 가입자는 별도 가입절차 없이 기사용한 계정 사용 가능
 - ※ 과제책임자 개인 명의로 과제 신청되므로, **개인회원** 계정의 명의 확인 필수

③ 3단계 : 온라인 접수

- 과제책임자 **개인회원** 로그인 후 ‘과제관리’ → ‘사업공모’ → 사업 선택 후 ‘접수하기’
- ‘기본정보’, ‘과제분류’, ‘참여기관’, ‘참여자’, 사업비 등 탭 순서대로 내용 작성
 - ※ 참여기관 조회: 종합관리시스템 기관정보 → 사업자등록번호로 기관조회
 - ※ 참여기관 등록: 미등록인 경우 기관정보 → 기관조회 → 새로입력 클릭 후 작성 → 대표자, 기관담당자 등 등록
 - ※ 파일은 한 번에 10개 파일까지 업로드 가능, [저장] 후 추가 업로드 가능(**압축파일 업로드 금지**)
 - ※ 개별 파일명 예시) 접수번호_기업명_과제책임자명_과제계획서
 - ※ 직인 및 서명 포함된 파일 업로드, **임시저장 후 미제출시 접수 누락**(최종제출 후에는 수정 불가)

④ 4단계 : 온라인 설문조사 참여

- 주관기관 과제책임자가 설문조사 작성(<https://forms.gle/ejFYAmkzh74wDTT8>)
 - ※ 주관기관 **과제책임자가 대표하여 수행 필수**(협력기관에 대한 정보도 과제책임자가 대표로 입력)

⑤ 5단계 : 접수 완료 확인

- 서울R&D지원센터 종합관리시스템 ‘과제관리’ → ‘접수과제’에서 **‘접수완료’** 상태 확인

○ 온라인 신청 시 구비서류

구분	서 식 명	대상		제출형태
		주관	협력	
계획서	과제계획서(반드시 직인 날인하여 파일 업로드)	○		한글(HWP)/ 스캔(PDF) 온라인 업로드
붙임 [필수]	[붙임1] 신청자격 사전검토 확인서	○	○	
	[붙임2] 개인정보 제공·수집·이용 동의서	○	○	
	[붙임3] 과제(부문)책임자가 최근 3년 동안 수행했던 또는 현재 수행 중인 서울형 R&D 지원사업 및 중앙정부·다 지자체 R&D·기업 지원사업 현황	○	○	
	참여기관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명)	○	○	
붙임 [해당시]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지원제외 대상 확인 필수) ※ 주관기관 필수, 협력기관(영리) 국세청 발급 재무상태표	○	○ (비영리x)	
	[붙임4] 연구장비·시설 구입 계획서	○	○	
	해당하는 우대가점 증빙서류 각각 업로드	○		
	참여제한 예외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증빙	○	○	
온라인	설문조사(주관기관 과제책임자 필수, 미수행 시 평가대상 제외)	○		제출 후 팝업/링크

6. 과제접수 및 수행 시 주의사항

- 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② 제출된 서류 및 과제계획서가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 제재할 수 있음
- ③ 과제 신청 관계자(참여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 설문조사 및 과제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여야 함
- ④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내용은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운영요령 및 운영규정’을 적용함
- ⑤ 본 사업 신청완료를 위해서는 주관기관 과제책임자가 대표로 설문양식을 작성 후 제출 완료해야함 (<https://forms.gle/ejFYAmkzh74wDTT8>)
- ⑥ 과제선정 후 불가항력적 사유 외 사업 포기 시, 추후 사업 참여 제재
- ⑦ [붙임1] 지원제외대상, [붙임2] 우대가점 목록 **필독**
※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음

7. 기술료 징수기준

- (기술료 징수대상) 과제 종료(조기완료 포함) 후 최종평가결과 ‘성공’ 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기술 실시권과 관련한 기술료 징수
- (기술료 징수방식) 주관기관은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운영규정」에 정해진 바에 따라 정액 또는 경상기술료 중 납부방식을 선택하여 납부
 - 정액기술료 : 실시기업의 유형에 따라 시지원금에 아래 기술료율을 곱하여 납부

실시기업 유형	정액기술료
중소기업	사용 시지원금의 10%
중견기업	사용 시지원금의 20%
대기업	사용 시지원금의 30%

- ※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을 말함
- ※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의 기업을 말함
- ※ 대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3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함
- ※ ‘사용 시지원금’이란 총 협약 시지원금 중 실제 사용한 시 지원금액을 말함
- 경상기술료 : 성과활용으로 발생한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납부 의무
 - ※ 경상기술료율 범위: 사용 시지원금의 20%~50%(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운영규정 제25조)
 - ※ 기술실시계약 체결, 기술료 징수·납부 방식, 기술료 감면·교부 등에 대한 세부요건과 내용은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운영규정(2021. 7. 1.개정)」에 따름

■ 문의처

- 온라인 : http://pf.kakao.com/_ubEPT (카카오톡 채널 서울RND지원센터)
- 담당자 : SBA R&D사업팀 김현주 선임(rnd@sba.kr, 02-2222-3836)

※ 서울산업진흥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있으며,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관계법률 및 내부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반 행위를 확인한 누구든지 SBA 클린신고센터,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국민 권익위원회 등을 통하여 신고 가능합니다.

[붙임1] 지원제외 대상

- ※ 참여기관, 참여기관장, 과제(부문)책임자가 아래의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 ※ 접수마감일 전에 제외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및 선정 이후라도 참여 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견되는 경우 평가·지원 제외 및 협약해약 조치

① 접수서류

- 과제계획서 등 제반서류(설문조사 포함)를 미제출 및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과제계획서 및 제출서류 등이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 서울형 R&D 지원사업 5년 간 참여제한

② 중복성

[주관기관 또는 과제책임자 기준]

- 접수마감일 기준 서울형 R&D 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주관기관 또는 과제책임자
- ※ 단, 접수 마감일 기준 수행 중인 서울형 R&D 지원사업의 잔여사업기간이 90일 이내인 과제책임자 또는 주관기관 예외

[과제 기준]

- 접수과제의 내용(기술개발 목표, 방법 등)이 타 사업·과제에서 수행되었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 참여기관의 기술개발 산출물이 기 지원·제작·생산·판매중인 제품·서비스 경우
- ※ 과제계획서 제출 전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에서 개별 확인

③ 참여율

- 과제(부문)책임자가 타 과제를 포함하여 과제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
- ※ 과제(부문)책임자는 당해 과제수행을 위하여 참여율 30% 이상 계상하여야 함

④ 의무사항

- 참여기관, 참여기관장, 과제(부문)책임자 등이 서울형 R&D 지원사업 및 중앙정부·타 지자체 R&D·기업 지원사업에서 제재(참여제한) 대상이거나 각종 보고서 제출 및 기술료 납부 등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⑤ 신용 및 기업 상태

- 기업의 부도·화의·법정관리 중인 경우(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개인의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 (체납)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 처분을 받은 경우
- (채무불이행)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 체납·채무불이행 관련 지원제외 적용 예외 대상
 - ㉠ 체납 사유를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
 - ㉡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 ㉣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 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 관련 문의처 >

-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신용회복지원 → 신용회복위원회(www.ccrs.or.kr, ☎1600-5500)
-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재창업자금(보증) 및 재기 지원 보증 → 중소기업 재도전종합지원센터(www.rechallenge.or.kr)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 등)에 따라 현재 연체 중이거나 매우 심각한 연체의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어렵거나 부실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의견'인 경우
- 최근 3년 이내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로 명단 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 등)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장, 체불사업주
- 최근 결산기준 부채비율 1,000% 이상인 경우(접수마감일 기준 창업 3년 이내 기업 예외)
- 최근 결산기준 전액자본잠식(완전자본잠식) 기업인 경우(접수마감일 기준 창업 3년 이내 기업 예외)

⑥ 기타 본 사업목적 및 지원분야 등으로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붙임2] 우대가점 목록

가점기준 : 각 항목 해당 시 종합평점에 가점(최대 5점 내 중복 인정 가능)

- 주관기관이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중복 가점 가능)(각 1점)
☞ 증빙서류 : 여성기업확인서, 장애인기업확인서, 사회적기업확인서 (예비사회적기업은 불인정)
- ‘서울시산학협력사업’에서 최근 3년 이내 ‘우수’로 평가받은 과제책임자가 신청자인 경우(1점)
☞ 증빙서류 : 서울형R&D지원사업 최종평가 결과 안내 공문 (결과공문: 성공(우수) 표기 과제)
- 접수 마감일 기준 주관기관이 최근 3년 이내 국가 또는 지자체의 기업 브랜드 대상 관련 수상 또는 인증 받은 경우(1점)
☞ 증빙서류: ☞ 증빙서류: 상장, 하이서울브랜드, 서울어워드 인증서 등 개별 확인서
- 접수마감일 기준, 주관기관이 기업부설연구소 인증 받은 경우(1점)
☞ 증빙서류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접수마감일 기준 3개월 이전 기술 개발을 위해 신규채용을 완료한 참여기업인 경우(1점)
☞ 증빙서류 :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모두 가입한 신규인력)
- 접수마감일 기준 주관기관이 최근 3년 이내 해외수출 실적을 보유한 기업인 경우(2점)
☞ 증빙서류 : ① 직접수출 : 수출실적증명서(한국무역협회 또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
② 간접수출 : 간접수출실적증명서(한국무역정보통신 또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
※ 직·간접 수출 둘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가점인정
- 접수마감일 기준 주관기관이 최근 3년 이내 공공 또는 민간투자기관으로부터 1회 2억 원 이상의 투자를 받은 기업인 경우(2점)
☞ 증빙서류 : 투자 계약서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투자금 등기 완료내용 포함 경우)
- 접수마감일 기준 주관기관과 협력기관이 모두 G밸리에 소재한 경우(1점)
☞ 증빙서류: 참여기관 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등 (G밸리: 구로구 및 금천구)
- 주관기관이 코로나19 등 경제악화로 인한 피해 기업일 경우(‘20년 대비 ‘21년 비교)(1점)
☞ 증빙서류 : ① [종합관리시스템] 접수과제 우대사항 입력사항 사유
② 증빙서류: 매출감소(2개년도 재무제표 등), 인력감소(2개년도 4대 보험 가입자명부 등), 계약취소(계약서 및 취소 공문 등)
- 주관기관이 개발하고자 하는 과제가 코로나19 관련 위기 대응 분야(비대면, 방역 관련 기술 등)인 경우(1점)
☞ 증빙서류: [종합관리시스템] 접수과제 우대사항 입력사항 사유 작성 필수

※ 접수마감일까지 해당 가점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가점 인정 불가(별도 보완 절차 없음)